공동기기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0년 12월 24일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공동기기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동기기”라 함은 연구와 산학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구성원 또는 산업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말한다.

제3조(역할) 공동기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 및 연구용 공동기기의 선정, 유지 및 관리
2. 시료의 분석 지원·서비스 사업
3.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
4.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
5. 공동기기관련 산・학・관・연 대외 협력
6. 공동기기 활용 연구 및 교육사업
7 기타 위 제호와 관련한 사업의 수행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) 공동기기센터는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직을 신설, 운영, 폐지할 수 있다.

제5조(조직과 역할)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획관리부: 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및 기획 공동기기의 선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교육연구지원부: 공동기기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, 실험실습 교육 및 전문가 양성업무, 공동기기를 이용한 연구, 산학협력연구과제 및 기타 학술활동, 홍보에 관한 사항
3. 기기운영지원부: 기자재의 설치, 운영, 공동기기의 활용지원 및 기기보수와 유지에 관한 사항

제3장 위 원 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공동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공동기기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, 관리처장, 연구·산학협력처장, 자연과학대학·공과대학·IT대학 부학장(단과대학당 1인)을 두고 그 밖에 조교수 이상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동기기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 이

내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동기기센터의 기자재 구입계획 수립 및 심의
2. 공동기기센터 예산 및 결산 심의
3. 공동기기센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
4. 기타 공동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⑤ 운영위원회는 심의한 사항을 연구·산학부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7조(자문위원회) ① 공동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교내·외 인사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)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.

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
2.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4장 재정 및 관리

제9조(재정) 공동기기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

1. 공동기기센터 편성 교비(산학협력단의 전출금 포함)
2. 정부재정지원사업비
3. 공동기기센터가 자체 수주한 사업비
4. 기기 이용 수수료
5. 타 기관의 보조금
6. 공동기기센터의 기기를 사용하는 단과대학 및 학과(부)의 실험실습비
7. 교원의 교내·외 연구비
8. 기타

제10조(관리) 공동기기센터의 기기 및 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제11조(사용허가) ① 교내외 기관에서 공동기기센터의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하고 센터장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도록 한다.

② 공동기기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필증을 제출하여야

한다.

③ 공동기기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기기사용 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기타 공동기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0.12.24.)

제1조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